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외동포협력센터 해산 및 재외동포청으로의 통합 등〉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61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정착 지원 정책의 명시	2
2.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절차의 정비	8
3. 재외동포협력센터 해산 및 재외동포청으로의 통합	11
4.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 신설	22
5. 부칙	26
※ 참고자료	34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2인
2. 제안일 : 2026년 2월 23일
3. 회부일자 : 2026년 2월 24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 중복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제3항, 제11조).

또한,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정착 지원 정책의 명시

개정안은 재외동포정책의 범위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차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재외동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자.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나.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다.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라.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과의 교육·문화·경제·사회 등 교류활동 및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공동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량 활용을 위한 정책 바. 재외동포 거주국 및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정책 사.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정책 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홍보에 관한 정책 자. 재외동포의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정책 <u><신 설></u> <u>차.</u>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u>차.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u> <u>카.</u> (현행 차목과 같음)

가. 관계기관 의견

1)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은 현재 국내 체류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으로도 해당 사업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임.

다만, 국내 정착 지원은 단순한 권익 향상 차원을 넘어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한 정주 기반 마련과 직결되는 정책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를 보다 명확히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국내 체류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주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로, 재외동포청은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안정적인 정주 지원 사업으로 ① 대상별 맞춤형 적응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② 지역별 국내 동포 정착지원 사업 추진, ③ 국내 동포 관련 민간단체 사업 지원, ④ 국내 체류 동포 정주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⑤ 국내 동포 정착지원 안내서 제작·배포, ⑥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 법무부

법무부는 개정안에 포함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은 기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정책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현재 법무부는 동포의 사증 발급 및 체류 관리, 취업 허용, 사회통합 교육, 국적 취득 절차 지원, 인식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국내 체류 동포의 출입국·체류 제도 안내, 취업·주거·의료 등 생활정보 제공 및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재외동포기본법」은 범명 및 입법 목적상 국외 동포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바,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정책을 포함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3개 민간단체 및 기관(2025년 6월 기준)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운영(2년마다 재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센터를 통하여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취업·주거·의료 등 생활정보 제공, 법질서 준수 교육 및 사회통합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최근 국제정세 불안정, 국내 체류 외국국적 동포('25년 기준 86만명) 수의 증가¹⁾, 저출생·지방소멸 등 인구구조 변화와의 연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정착 지원 정책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현행법 체계에서도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에 따라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국내 정착 지원은 단순한 권익 보호를 넘어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한 정주 기반 마련과 직결되는 정책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를 보다 명확히 법률상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출입국·체류·취업·사회통합교육·국적취득 지원 등 핵심 정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등 구체적인 정착 지원 체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정착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기본법 차원에서 명시하려는 입법정책적 선택으로 이해될 수 있음

1) 국내 체류 외국국적 동포 수: 2020년 811,000명, 2021년 779,000명, 2022년 805,000명, 2023년 849,000명, 2024년 864,000명, 2025년 860,000명(2026.02., 재외동포청 제공자료)

나, 기존 개별 법률에 따른 지원 체계와의 관계, 기본법의 규범적 성격 및 소관 부처 간 기능 배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 정합성과 부처 간 역할 분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절차의 정비

개정안은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명확히 하고, 재외동포청장이 그 결과를 종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재외동포정책의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①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현행	개정안
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u>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 ----- -----<u>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u>----- -----. ④ (현행과 같음)

가. 재외동포청 의견

재외동포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재외동포청장이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경우, 재외동포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 조정·총괄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절차를 살펴보면, 재외동포청장은 현행법 제7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현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현행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면,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는 재외동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재외동포청장이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추진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제출 방식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3. 재외동포협력센터 해산 및 재외동포청으로의 통합

개정안은 현행법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를 삭제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통합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 2.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 3.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	<삭 제>

현행	개정안
<u>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u> <u>④ 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장과 필요한 임직원을 둔다.</u> <u>⑤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u>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립,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u> <u>⑦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u>	

가. 관계기관 의견

1)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의 일관성과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 기능을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수용하는 의견임.

현재 대통령 지시사항²⁾에 따라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흡수·통합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아울러 재외동포청은 과거 재외동포청 설립 당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구)재외동포재단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유사한 행정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한편, 조직 통합에 따른 인력 승계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에 따른 ‘공개 경력경쟁채용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 확보라는 제도적 원칙을 준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조직 통합에 따라 재산·기존 사업의 승계 및 운영 방식 정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조치와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함.

2) 2025.12.19. 재외동포청 업무보고 시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간 업무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 효율화를 위해 재외동포청 중심으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2) 재외동포협력센터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청으로의 흡수·통합이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정부 정책 방향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안임을 전제로, 조직 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임.

다만, 그간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반복적인 조직 개편과 거주지 이전 등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자발적 실직, 가족 동반 이주에 따른 주거·교육·생계 문제 등 인력 운영과 관련한 어려움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함.

<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재외동포협력센터 조직 변동사항 >

- 1997.10. 재외동포재단 설립(「재외동포재단법」, 서울 서초구 소재)
- 2018.07. 재외동포재단 본사 제주 이전(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 2023.06. 재외동포재단 해산 →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협력센터 이원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 공무원 지원 가능 직원 경력경쟁을 통해 동포청 채용(20명)
 - 제주 → 서울(양재동 외교타운 소재) 재이주

※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경영기획실(2026.02.27.)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 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조직 통합 과정에서 고용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수행해 온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능·조직·예산·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승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나. 검토의견

1) 재외동포협력센터 현황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2023년 6월 5일 설립된 법인으로,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운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2023.06.12.)되어 있음. 현재는 서울 외교센터(양재동, 외교부 소유 건물)에 위치하여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 중임.

입법 당시에는 재외동포 대상 초청·연수·교류지원 사업의 특성상 중앙부처에서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외국적 동포 관련 사무에 있어 외교적 갈등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별도의 법인 형태로 설립한 배경으로 제시된 바 있음.

즉,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외교부 조직이었던 재외동포영사실(현 영사안전국)과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이었던 구(舊)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나, 통합 당시 재외동포청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자격요건(근무경력 3년 미만) 미충족, 미응시 또는 불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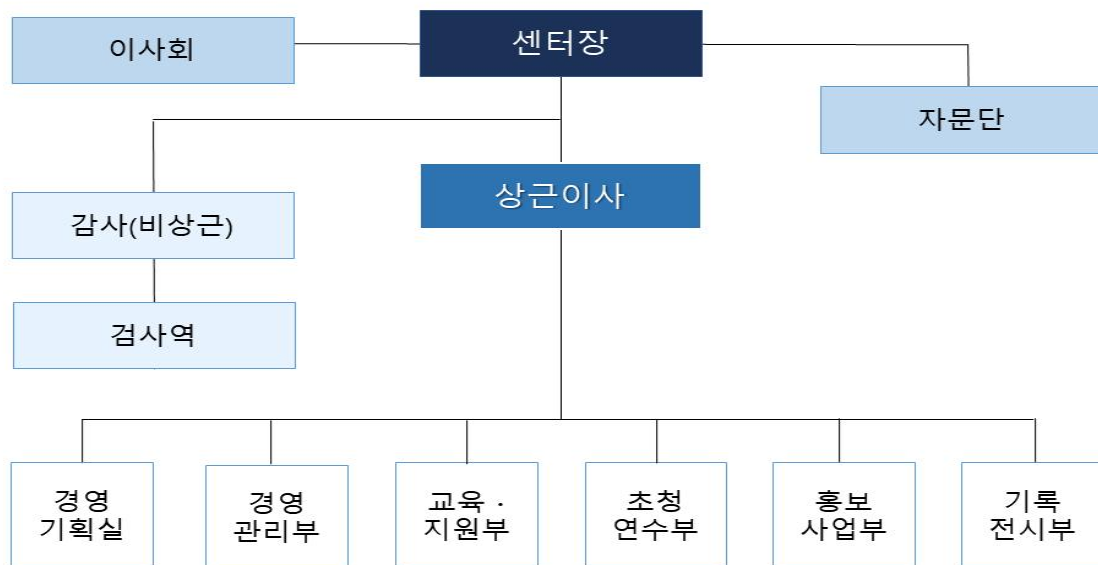
등의 사유로 채용되지 못한 재단 직원에 대하여는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로 고용을 승계함.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주요 업무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① 재외동포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 ②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 ③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④ 그 밖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같이 재외동포협력센터는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으로서 설립 이후 재외동포 대상 교류·연수·교육 사업 등을 수행해 왔으며, 법인 형태에 따른 일정한 조직적 독립성과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상근이사, 비상근 감사, 감사역을 두고 있으며, 1실 5부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재외동포협력센터 조직 현황 >



2026년 2월말 현재 임직원은 정원 36명 대비 현원 39명으로 정원을 3명 초과하고 있으나, 이는 「재외동포기본법」 부칙 제4조3)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직원 고용승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한시적으로 별도 정원이 인정된 데 따른 것임.

< 재외동포협력센터 인력 현황 >

(단위: 명, 2026. 2월말 기준)

구분	임원	일반직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별도 정원	
정원	2	1	4	8	10	11	-		36
현원	1	1	4	7	10	13	2	1	39

※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경영기획실(2026.02.27.)

예산의 경우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은 23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2026년도 재외동포협력센터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비목	구분	예산현액	통합 후 조치(안)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5032-302)	기관운영출연금 (350-01)	인건비	3,955	공무원 인건비(이용)
		경상운영비	1,169	각 세부사업(전용)
	사업출연금 (350-02)	사업비	18,654	각 세부사업(전용)
합계			23,778	

※자료: 재외동포청 기획재정담당관실(2026.02.27.)

- 3) 「재외동포기본법」 부칙 제4조(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센터는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이 경우 제11조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의 수가 센터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취지 및 기대효과

현행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 제6항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외동포협력센터는 법인 형태로 운영되면서 일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재외동포 대상 사업을 수행해 왔음.

개정안은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를 삭제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통합하려는 것으로, 재외동포정책의 기획·조정 기능과 사업 집행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집행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재외동포청과 협력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 및 예산 구조를 단일 체계로 정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통합적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음.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통합할 경우, 일정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추계에 따르면 약 7억 7,300만원(2025년 기준) 상당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는 임원 2명에 대한 보수 절감에 따른 인건비 약 3억 3,500만원이 예상되며, 경상비 부문에서는 약 4억 3,800만원 상당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됨.

< 기관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 예상 내역 >

- 인건비 절감액 335백만원(임원 2명 보수, 2025년 기준)
- 경상비 절감액 438백만원 상당액
 - 일반수용비(100백만원): 기관 브로셔, 기념품, 다이어리 등
 - 임차료(78백만원): 사무실 사용료 등
 - 시설장비유지비(51백만원): 사무공간 조성
 - 일반용역비(196백만원): 교육훈련, 노무관리, 물품관리, 기타 용역비 등
 - 자산취득비(13백만원)
- ※ 실제 규모는 조직 통합 이후 직제 설계, 인력 재배치, 사무공간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경영기획실(2026.02.27.)

(2) 법인 해산에 따른 법적·제도적 쟁점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되어 온 공공기관인바, 개정안에 따른 제11조 삭제는 단순한 기능 조정이 아니라 법인의 해산 또는 조직 통합을 수반하는 구조적 변화에 해당함.

이에 따라 자산·부채의 승계, 위탁사업 계약 관계의 처리, 기존 사업의 연속성 보장 여부 등과 관련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인력 승계 방식, 직제 반영, 처우 보장 범위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인사·노무상 분쟁의 소지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3) 전문성 유지 및 조직 설계의 필요성

재외동포협력센터는 법인 형태로 운영되면서 일정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통합 이후에도 해당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는 조직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주요 기능을 반영하여 재외동포청 내 1개 국 4개 과 신설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바, 향후 직제 개편 과정에서 기능 및 인력의 실질적 승계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조직 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재외동포청으로의 흡수·통합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직제 개정은 법률 개정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바,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경우 조직 정비 및 예산 통합을 '27년도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어 제도 전환의 안정적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정책 총괄기관(재외동포청)과 집행기관(재외동포협력센터) 간 이원화 구조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조직 운영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편 방향이 이미 제시된 상황에서는 일정한 시점 내에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음.

한편, 개정안의 심사가 지연될 경우 조직 통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됨에 따른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인력 운영 및 업무의 안정성⁴⁾이 저하되어 핵심 인력의 이탈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우려도 있음.

4) 2023년 재외동포청 설립 시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 지연으로 인한 (구)재외동포재단의 사업지연 후유증이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까지 지속된 사례가 있음

이처럼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해산 및 재외동포청으로의 기능 통합은 정책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법인의 해산·승계에 따른 조직·재정·인사상의 파급효과도 수반하는 사안인바, 개정안 수용 시에는 관련 경과조치 및 후속 제도 정비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 신설

개정안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해 국고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 소재 재외동포 관련 단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전자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가. 재외동포청 의견

재외동포청은 현행 「재외동포기본법」에는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관리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으로, 동포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수용 입장임.

특히 해외 소재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경우 국내 본인 인증 및 사업자 등록, 언어, 네트워크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⁵⁾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이용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는바, 별도의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제3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③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5.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6.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7.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별도의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보조금 예산의 편성·교부·집행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⁶⁾ 및 같은 법 시행령⁷⁾에 따라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금액 등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 지급근거가 없더라도 예산에 반영된 경우 보조금 지급은 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작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기본적 근거를 개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안 제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8) 2025년도 예산의 경우 보조금으로 332억 7,100만원(민간경상보조 1억 8,100만원, 해외경상이전 324억 4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6억 8,600만원)이 반영됨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한편, 안 제17조제2항은 해외 소재 재외동포 관련 단체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전자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외 단체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집행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5. 부칙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관계기관 의견

1)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흡수·통합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일정한 행정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에 따라 시행일을 공포 후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며, 아울러 법인의 해산에 따른 권리·의무·재산의 승계 및 종전 행위의 효력 인정 등에 관한 명확한 경과조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함.

2) 재외동포협력센터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기본법」 개정 시 직원 전원의 흡수 통합을 위한 한시적 특례조항을 두어 고용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 지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이라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재외동포 관련 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부칙에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함.

나. 검토의견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해산 및 재외동포청으로의 기능 통합은 법인의 소멸과 권리·의무 및 재산의 포괄적 승계를 수반하는 구조적 변화에 해당함. 특히 위탁사업 계약 관계, 자산·부채의 처리, 기존 행위의 효력 귀속, 인력 운영 체계 정비 등 다수의 법률관계 조정이 요구되는 사안임.

(1) 시행일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제 개편, 예산 조정, 자산 이전, 계약 관계 정리 등 기관 통합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기관 통합에 따른 후속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최소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잠정, 3~4월) 이후 직제 개정(잠정, 5월), 채용 공고(잠정, 5월), 채용 완료(잠정, 8월)

를 거쳐 개정안 시행의 일정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시행일을 공포 후 일정 기간(4개월 또는 5개월) 유예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개정안을 즉시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전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음.

다만, 유예기간이 과도하게 장기화될 경우 조직 운영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우려도 있는바, 준비 절차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과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예산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와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 예산 조정 방향성에 대해 협의를 거쳤으며,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예산 이·전용 절차를 실시할 것으로 보임.

(2) 조직통합에 따른 인력 문제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해산 및 기능 통합은 인력 운영 체계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직원 고용의 처리 방식은 제도 전환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개정안은 부칙에 직원의 신분 처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해산될 경우 현행 법령 체계상 고용 승계에 관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인의 소멸과 함께 소속 직원의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최근 공공기관 또는 유사 기관의 통합·해산에 따라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의 고용 승계 사례를 살펴보면, 사안별로 상이하게 결정되어 왔으며, 고용을 법률로 직접 보장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접근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① 방송위원회 - 정보통신부 통합(2008년)

방송위원회(민간)와 정보통신부 등을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입법을 통하여 ‘민간인’ 신분인 방송위원회 직원 중 희망자를 특별채용 방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음.

당시에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관련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직제 개정 및 인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통합을 완료한 바 있음.

② 아시아문화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통합(2021년)

아시아문화원(민간)을 해산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공무원 조직)으로 업무를 편입한 사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입법 과정에서 문화원 직원의 공무원 신분 보장을 명문화하는 부칙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공정성 논란 및 헌법상 평등·공무담임권 원칙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최종 삭제된 바 있음.

이후 문화원 직원은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전당 공무원으로 채용되거나, 별도로 설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공공기관)으로 고용 승계

되는 방식으로 처리됨.

아울러, ③ 대한석탄공사 폐업 사례(2025년)를 살펴보면, 현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향에 따라 대한석탄공사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전원 퇴직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위로금 지급 등 보완조치를 병행하고 있음.

일부 직원의 타 기관 흡수 승계 요구가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원칙적으로 고용 승계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 보완적 지원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이와 같이 공공기관 또는 유사기관의 통합·해산 사례를 보면, 인력 처리 방식은 ① 특별채용을 통한 제한적 승계, ② 공무원·공공기관 이원적 분산 승계, ③ 원칙적 퇴직 후 지원 조치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전원 고용을 법률로 직접 보장하는 방식은 공정성 및 법제적 정합성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되어 온 것으로 보임.

한편,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업무 통합에 따라 증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외동포청의 공무원 증원(순증 36명 요청)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직제상 증원된 인력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여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이 경우 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⁹⁾에 따라 채용 절차가 진행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부칙상 특례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현행 법령 체계

9) 【참고자료 2】 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 참조

내에서 인력 충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반면, 특정 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채용 특례를 둘 경우 공무원 채용의 일반 원칙인 공개성과 형평성, 평등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특히 전원 승계를 법률로 보장하는 방식은 인사권의 재량 범위, 국가공무원 제도와와의 정합성 등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사안임.

다만, 업무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일정한 범위의 경력 요건을 제시하는 형태의 특례 규정을 부칙에 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원칙과의 조화, 형평성 문제 및 입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조직통합에 따른 인력(고용승계) 문제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필요성, 고용 안정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원칙 및 법제적 한계 등을 균형 있게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권리·의무 및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안은 권리·의무 및 재산 승계에 관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권리·의무 및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는 조직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공백을 방지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

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의 해산·승계를 수반하는 제도 개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명확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해산을 「민법」상 일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주 해산으로 처리하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재외동포청이 포괄 승계하도록 하며, 종전 행위의 효력을 재외동포청의 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 입법례: 권리·의무 및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

「정부조직법」

부 칙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재외동포재단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한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청의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다.

제4조 ~ 제8조 (생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 칙 <법률 제17964호, 2021. 3. 23.>

제4조(아시아문화원의 권리·의무 및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의 권리와 의무는 문화전당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의 재산은 문화재단의 설립일부터 문화재단에서 승계하되,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재단의 설립 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문 의 처

02)6788-5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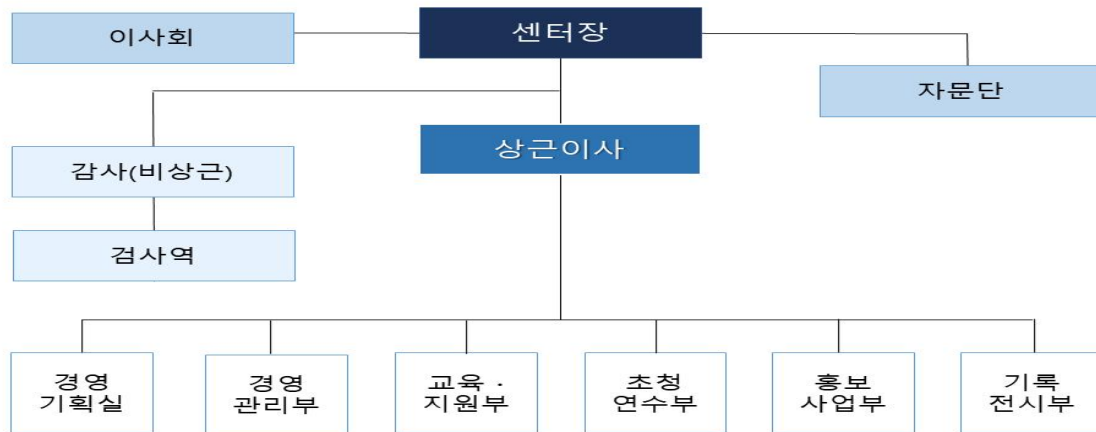
【참고자료 1】 재외동포협력센터 개요

□ 주요 업무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

-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재외동포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사업
-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
-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조직 현황

- 센터장, 상근이사, 감사(비상근), 감사역, 1실 5부



- 정원 36명, 현원 39명

(단위: 명, 2026. 2월 말 기준)

구분	임원	일반직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별도정원	
정원	2	1	4	8	10	11	-		36
현원	1	1	4	7	10	13	2	1	39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27,757	23,778	△3,979	△14.3
인건비	3,821	3,955	134	3.5
경상운영비	1,169	1,169	-	-
사업비	22,767	18,654	△4,113	△18.1

【참고자료 2】 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 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1. 5. 23.>

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⑤ (생략)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 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공무원법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2. (생략)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 ~ 13.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 공고일(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 ⑦ (생략)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①·② (생략)

③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 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④ (생략)

[별표 9]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27조제3항 관련)

임용예정 계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무분야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12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	10년 또는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6년	3년	3년	3년

비고

1.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및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요경력연수에 도달한 때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다.

2.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소속 장관이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3. (생략)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11호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1의2.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시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4. 삭제 <2018. 5. 8.>

5.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10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응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개방형 직위에 임용 중인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제10항 단서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은 제외한다)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③ ~ ⑩ (생략)